

# 간호학과 간호과학연구소 운영세칙

제정 2026. 04. 13.

**제1조(목적)** 본 운영세칙은 경동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)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간호이론 개발 및 간호대상자·간호교육 등 간호학 발전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연구와 제반 사업의 체계적·표준화·지속적 수행 및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간호학과 간호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장은 간호과학연구소장(이하 ‘소장’)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소장은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소장이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 부서 담당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⑥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팀을 설치 및 폐지할 수 있으며,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.

**제4조(임기)** ① 위원장의 임기는 소장의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의 임면 또는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 운영계획과 그 이행점검
2.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
3. 연구소의 예산 심의 및 결산
4. 연구 사업의 평가 및 집행 예산의 조정
5. 연구팀의 설치 및 폐지
6. 그 밖에 위원장이 발의하는 사항

**제6조(위원회 회의)** 위원회 회의는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8조에 따른다.

**제7조(위원회 회의록)** 위원회 회의록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9조에 따른다.

**제8조(사업)**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간호학적 이론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
2. 간호학적 중재에 대한 연구
3. 간호교육에 관한 연구
4. 교수자의 학문적·전문적 활동 관리 및 지원(학회 활동, 임상연수, 논문·저서, 봉사활동 등)
5. 기타 간호에 관련된 사업 및 연구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**제9조(재정)**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
1. 교외 연구비 및 수탁 과제비
2.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
3. 본 대학교의 연구 지원비 및 운영 지원비

**제10조(연구비 및 관리비)**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른다.

**제11조(예산, 결산)** ① 연구소의 예산 편성은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연구소의 예산 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집행한다.

**제12조(성과평가 및 CQD)** ① 연구소는 매년 연구소 운영 및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과제 및 이행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.

② 성과 평가 결과는 차년도 연구소 운영 및 사업계획에 반영한다.

③ 평가 결과는 간호교육인증평가, 대학 성과관리 및 관련 행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, 관련 자료를 문서로 보존한다.

**제13조(보고서 및 자료관리)** 연구소는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작성·관리한다.

1. 부서별 운영계획서
2. 부서별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

**제14조(준용)**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56조에 따른다.

**제15조(운영세칙 개정)** 본 운영세칙의 개정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57조

제2항에 따른다.

부 칙

본 운영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,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.